

특별기고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배상안을 공식화하면서 제3자 변제라는 낯선 법률용어가 일상용어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정치상황과 한걸음조차 떨어져 바라볼 수 없게 된 제3자 변제란 법률용어를 최대한 순수하게(?) 법률가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전채무 원칙·제한 규정

제3자 변제는 민법 제46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이렇게 네 개의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3자 변제는 그 중 ‘사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편에서도 채권의 소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멸은 용어 그대로 채권이 종국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에 규정된 채권소멸의 방법에는 상계나 혼동이나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난해한 법률용어들도 있지만 면제나 변제와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뜻이 짐작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제는 쉽게 얘기하면 금전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제는 당연히 의무 있는 사람이 해야 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법은 유명 음악가의 연주나 소위 일타강사의 강연과 같이 채무자 자신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채무가 아닌 바에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이를 하여도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니 누가 변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제3자 변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 역시 함께 두고 있고, 제한하는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일신전속적 채무와 같이 채무의 성질이 허락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입니다.

정부의 배상방안을 법률적 관점으로부터 판단하면, 첫 번째는 채무의 성질이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금전배상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일신전속적인 채무는 아니어서 제3자 변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시기의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금전배상의 측면만 있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였다면 정부 역시 제3자 변제라는 방안까지 동원하여 배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채권자인 생촌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단에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제3자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효과

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는 대법원의 배상판결로 인한 채권이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

마지막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해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면 자신을 위해 변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는 자신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재단은 재판의 당사자가가 아니어서 자신이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재단 스스로도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전범기업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자체를 부정하는 채무자를 위하여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 사서 고생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 아래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3자 변제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즉 양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굳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기업은 그 쪽에 맡겨두고 우리나라 당사자의 의사만이라도 살펴보고다면 ‘기꺼이 전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을 하고 ‘반어법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변명하는 도지사까지 나올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른 봄꽃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오르면서 봄의 시작도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봄을 알리는 꽃이 빨리 피게 되면 외부온도에 민감한 변온곤충인 꿀벌들이 벌통에 머물며 체력을 비축하지 못하고 채집활동을 하게 되어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질병과 해충에 노출돼 집단폐사로 이어지거나, 추울 때 따뜻하고, 따뜻할 때 추운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벌떼가 동지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밖에서 죽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 농작물의 70% 정도가 바로 꿀벌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화분 매개자인 꿀벌이 줄어들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이는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봄꽃의 이른 개화, 꿀벌의 실종, 지속되는 가뭄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지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른 봄꽃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행사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청사와 아파트, 남산 서울타워 등 각 지역 명소에서 동시에 10분간 조명을 끌 경우 5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또한 기상청의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에도 평균 개화시기를 3월 중순으로 추정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감축이 이른 개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지금처럼 3~4월에 제때 꽃이 피는 모습을 만끽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1세기 후반 지구의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기념일이 있지만 4계절의 경계가 희미해진 지 오래인 지금, 어떤 날이라서 아니라 ‘오늘, 지금, 나부터’ 불필요한 조명 끄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 절약하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에 동참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물려주기를 희망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책 마련을

납제도’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층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지 않더라도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1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전연 분리, 내부 반발 귀 기울여야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움직임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한 바, 역시나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리파는 지역특화 연구 약화를 들고, 통합파는 상생이란 시대흐름 역행 등을 지적하며 팽팽하게 맞선다.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갈등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주목할 점은 광주전남연구원의 구성원은 재분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구성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연구원 재분리 추진에는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소통의 과정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시도는 재분리 명분으로 상생연구 부족, 이해 상충주제 연구 기피, 지역별 특화연구 미흡 등을 들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성찰할 부분도 있지만, 재분리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연구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리를 추진하더라도 먼저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

하다. 이들은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심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는 초광역화, 지역 간 통합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퇴행이다”고 규정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 있을 정도로 정확히 핵심을 짚었다. 분리는 시대흐름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의 70% 이상, 박사급 연구위원 80% 이상이 분리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 등 일부에서 추진하는 분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서 얻는 연구결과물은 무엇을 위한 목적일까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초광역화 및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과 상생이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을

일선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리실무사를 35명을 공개모집했으나 21명만 채용되고 14명이 결원됐다. 미달된 조리실무사는 각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기간제 인력으로 채웠다.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구인난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조리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매일 대용량의 식재료를 수시로 운반해 재료를 손질한다. 무거운 대형 조리기구로 사용해 수백명 분의 음식을 만든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도 열악하다. 조리실무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중 2유형으로 조리사는 196만여원, 조리실무사는 186만8,0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임금이 비해 일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보니 3개월도 채 못 버티고 나가는 중도 퇴사자가 비일비재하다. 인력이 부족한 학교는 기존 근무자들만 2~3배 업무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리실 발생으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 폐암 위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급식실 근무를 더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5년간 60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고, 28%가 폐 ‘이상소견’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3명, 전남은 2명 등 5명이 폐암에 확진됐다. 광주는 전체 수검자 1,185명 중 327명이 이상 소견을 받았고, 전남도도 전체 수검자 2,190명 중 565명이 이상 소견을 받았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맘을 흘리지만 정작 급식실 노동자들은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야 환기 설비 지원, 미세먼진(조리실) 최소화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보호구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14년간 폐암 유발 환경에 노출되는 동안 정부는 안이했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노조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 살인’ 보이스포싱 주의하자

기고



정진욱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경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작년 취임 이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7대 사기 중에서도 서민들이 당하기 쉽고 피해 금액이 큰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 경찰청, 은행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다음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

져 있다.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일명 콜센터라고 불리며 전화 및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범행을 쓰일 대포통장 및 은행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송금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있다.

요즘은 경찰·검찰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기관사칭형’ 보다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이 많다.

기존 대출의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던 서민층이라면 이들의 말에 혹하게 된다. 피해자들 중 사기를 전혀 눈치 못 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욕심에 대출을 받게 되면 송금이 트일 것 같아 주변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구해 대출금을 마련하는 등 시야가 좁아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없는 사람들이 더 당하는 범죄이며, 지인들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부담하게 된다. ‘수거책’을 잡더라도 이는 꼬리일 뿐이며 돈은 이미 국외로 송금해버린 탓에 피해금을 회복하기란 요원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전화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이 같은 사례를 속지해 주변에 전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